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13-82 |
|--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3. 10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 사유

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부서 명칭 변경
 - “교육지원과”를 “교육청소년과”로 명칭 변경
- 나. 강화된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
 - 주민생활국장 분장사무에 “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” 추가

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 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 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3. 9.30. ~ 2013.10. 6.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10.10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교육지원과”를 “교육청소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0.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, “교육지원과”를 “교육청소년과”로 한다.

③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 중 “교육지원과장”을 각각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行 | 개 정 安 |
|--|--|
| 제6조(주민생활국)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행정과·일자리진흥과·사회 복지과·가정복지과· <u>교육지원과</u> ·청소행정과를 둔다. | 제6조(주민생활국) ① ----- ----- ----- <u>교육청소년과</u> -----. |
| ② 주민생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 ② ----- -----. |
| 1. ~ 19. (생 谕) | 1. ~ 19. (현행과 같음) |
| 20. <u>삭제 <'08.12.11></u> | 20. <u>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</u> |
| 21. ~ 40. (생 谕) | 21. ~ 40. (현행과 같음) |